

도시가스공급계약서

(거래처명 : (주)아토)

2002년 07월 일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

도시가스공급계약서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 와 주식회사아토 (이하 “을”이라 함)간에 도시가스를 수용 및 공급함에 있어 도시가스 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도시가스 수용내역

사용자상호 : 주식회사아토 사업자등록번호 : 133-81-27249

수용장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오창산단 17-4 브럭 전화번호 : 031 - 496 - 7477

공급방식 : 공급압력 4.0 ~ 5.5 kg/cm², 사용압력 : 230 mm H₂O

공급예정일 : 2002년 07월 일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없을)

사용예상량 : 40,950 N m³ / 년

제 2 조 시설분담금

을은 갑이 도시가스 관로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이 승인한 공급규정의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현금 납부한다.

(계약용량 45 m³/hr, 일금 구십일만원정, 부가세별도)

단, 계약용량변동으로 인한 추가 계약 시에는 도시가스 공급 전에 완납하기로 한다.

제 3 조 가스사용요금

제 4 조 가스사용량의 산정

- 갑은 도시가스의 인도량을 검침하여 검침카드를 작성하고 을은 인수량을 상호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검침카드에 확인 서명한다.
 - 도시가스의 최고압력 250㎩ H₂O 초과시에는 보정장치가 부착된 가스계량기의 보정 실 사용량을 요금산정 사용량으로 한다. 단, 보정장치의 미부착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량 검침이 불가할 경우 공급규정 제21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보정하여 실 사용량을 산출한다.

$$\text{실 사용량} (\text{M}^3) = \text{계량기 검침량} \times \frac{(10,332 + P) \text{ mm H}_2\text{O}}{(10,332 + 100) \text{ mm H}_2\text{O}}$$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제 5 조 공사구분 및 가스공급

1. 갑은 을의 대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매설공사를 시행하고 타공사 또는 기타 위해로부터 시설보호를 위한 관로순찰, 정압기 점검 등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안전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을은 대지경계 내 사용시설공사를 자기비용으로 시행한다.
2. 가스의 공급은 갑이 을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을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 공급한다.
3. 가스의 공급시기는 도로굴착허가권자의 허가시기, 허가조건, 조정명령 또는 기타 부득 이한 사항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원만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제 6 조 안전관리

1.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을의 가스사용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을은 즉각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스사용 시설물 설치 기준에 미흡할 시에 갑은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갑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와 타공사로 인한 사고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 상 필요 시에는 가스공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4. 을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선임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스의 누설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공급개시 이후 을은 갑의 승락 없이 도시가스사용시설물의 재해발생 우려가 되는 추가연결, 구조변경 등 일체의 임의사용을 할 수 없다.

제 7 조 가스사용시설물 관리

1. 을은 가스계량기의 점검, 검정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계량법에 의한 허용공차 초과,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판정된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즉시 신계량기로 교체 또는 수리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급자의 요청으로 검사결과 허용공차 범위 내 일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2. 대지경계 내 배관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개체, 보수 및 정기검사비용, 도시가스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열량변경 및 호스연결작업수수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1.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갑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과 공급예정일 이후부터 도시가스 공급일까지 사용연료와의 차액에 대한 금액을 갑이 1월 이내에 배상하고, 을이 공급예정일이내에 사용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예정일부터 도시가스 공급일까지 사용예상량의 공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이 1월 이내에 배상한다.

3. 사전 예고 없이 제 6 조를 제외한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됨으로 을의 가스사용에 지장을 주어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갑이 배상책임을 진다.
4. 이 계약 체결이후 을의 귀책사유로 도시가스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년간 예상사용량의 70%미만 사용 또는 을의 연료전환 등 일방적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제 5 조 1항에서 정하는 갑의 공사금액 및 기타비용을 갑이 청구하고 을은 청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공급개시 이후 갑의 승락 없이 을이 임의 추가연결,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갑에 대한 손실 또한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6.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금액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연체료를 우선 적용하고 공급규정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 매월 2%로 계산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갑은 을에게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관로투자를 하였는 바, 본 계약은 2002년 07월 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 을이 사용연료를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용량에 30%이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사전 최고기간 30일을 거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본 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1년 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0 조 우선적용 및 기재 외 사항

본 계약의 기재사항과 도시가스공급규정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본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과 공급규정, 기타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2년 07월 일

“갑”

“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19-1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오창산단 17-4 브럭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

주식회사아토

대표이사 유 춘 재



대표이사 문 상 영





한국전기안전공사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우360-2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81 /전화(0431) 210-4500 /전송(0431)210-4510 /담당자 이강두

문서번호 충북(기술) 740 - 2674

시행일자 2002. 11. 01.

(경 유)

수 신 (주)아토

참 조

결재			결재		
	접수	일자 시간 : . . .			
수	번호		공람		
	처리부				
담당자			담당자		

제 목 사용전검사 결과 통보 (합격)

귀 사에서 신청하신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수전, 구내, 배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용전검사 필증 1부 끝.

충북지사

‘다같이 새로 시작합시다’





제25100457호

(사용전) 검사필증

신청인	대표자성명	문상영	전화	(043) 210-4300
	회사명 또는 상호	(주) 아토		
	주소 또는 소재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17-4번길 오창과학산업단지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수전설비 22900V / 2000kW 발전설비 220 / 182kW 금회검사 : 구내배전설비		
	검사년월일	2002년 10월 30일		
	검사자	소속	충북지사	성명
판정	합격 (차기검사 : 2005년 08월)			
임시 사용	허용사유 : 사용기간 : 사용범위 및 방법 :			
기타 :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립니다.				
2002년 11월 0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인) 위임에 의하여 충북지사장				
검사신청인 문상영 귀하				
※ 기재요령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한국전기안전공사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우 360-8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781 / 전화(043)211-3851~4 / 전송(043)212-3593 / 담당자 이강두

문서번호 충북(기술)740-~~2579~~

시행일자 2002. 08. 19.

수신 (주)아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결재	
	번호		·	
처리부			공람	
담당자				

제 목 사용전검사 결과 통보 (부분합격(I))

귀사에서 신청하신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합격(I)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구내 부하설비는 전기설비가 완료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전검사 필증 1부. 끝.

충북지사

“무관심한 전기안전 늘어나는 전기재해”



[별지 제 30호 서식]

【 사용전 】 검 사 필 증

발행번호 제 15100296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문 상 영		전화번호	(043) 351-7233
	회사명 또는 상호	(주)아 토			
	주소 또는 소재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17-4(오창과학단지)			
검 사 결 과	검 사 전 기 설 비	수전설비 22900V 2000 kW ,구내배전설비(사무동) 발전설비 380-220V 182 kW			
	검 사 년 월 일	2002. 08. 14			
	검 사 자	소 속	충 북 지 사	성 명	이 강 두 (인)
판 정	부분합격(I) (차기검사 : 2005 년 08월)				
기 사 :	1. 부분검사 신청사유 :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일부사용 2. 사용범위 :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사무동) 3. 전체공사 완료 예정일 : 2002. 09. 30. 4. 미검사부분 설비설치후 사용전검사를 필한후 사용바람.				

전기사업법 제63조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립니다.

2002 년 08 월 19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인)

위임에 의하여 충 북 지 사 장

검사신청인 문상영 귀하

기재요령 : 판정은 합격,부분합격,임시사용 등으로 기재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 g / m²

『에너지절약 너나 없다 가까운총 걸어가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충북지원

인터넷 : <http://www.kesi.or.kr>
361-2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1

문의안내담당 : 박영태
/ 전화 (043) 267-7035~7 / 전송 267-7038

문서번호 충북G5 - 1280

시행일자 2002. 7. 26.(년)

받음 오창가스공장

관리주체

참조 승강기 담당자

제목 승강기 완성검사 결과 통보

1. 귀사(하)가 신청한 승강기 완성검사 접수번호 20020711-00005(2002/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같은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토록 하고, 선임된 운행관리자는 완성검사 합격일로부터 6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완성검사결과내역서 1부. 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충북지원장



승강기 검사를 공정히 하겠습니다. 승강기 검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080-554-4755, 본원 감사부 02) 501-0544, 본원 총무부 02)501-0547]

완성검사결과내역서

건물명 : 오창가스공장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4-3호(오창과학산업단지)

검사대수 : 1

검사일자 : 2002/07/26 -2002/07/26

호기	설치장소	종류	형식	검사결과	유효기간	비고
1	1-1	덤웨이터	로프식교류	합격	2003/07/25	